

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「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」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.

II. 검토의견

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전문위원 이 은 정)